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</p> <p>①(생 략)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(생 략) 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(현행과 같음) <b>4. 환매조건부 매수</b></p>
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~5.(생 략) &lt;신 설&gt;</p> <p>6.~9.(생 략) ②~⑥(생 략)</p>	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~5.(현행과 같음) <b>5의 2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(별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</b></p> <p>6.~9.(현행과 같음) ②~⑥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(생 략)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 략) &lt;신 설&gt;</p>	<p><b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 <b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</b></p>

	<p><u>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
③~⑤(생략)  <신설>	③~⑤(현행과 같음)  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/u>